
사회복지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목적

-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을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실제적인 사회복지실천의 훈련과정 이다.
- 실습을 수행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실습교육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실천현장에서의 문제해결과정에 사회복지 가치 및 윤리강령의 내용, 지식 및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② 클라이언트체계의 문제 확인, 정보수집, 사정평가, 개입계획 및 개입수행, 그리고 평가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터득한다.
- ③ 지역사회 내 위험집단 및 표적 집단의 강점 및 특성과 자원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④ 사회복지시설, 기관 및 조직의 사명, 정책 및 행정을 연구하고 파악한다.
- ⑤ 실천현장 관련 국가 및 지역(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및 전달체계를 분석하고 실천에 적용한다.
- ⑥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아인식을 증진시키고 전문직 정체감을 형성한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의 필요성

-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필수능력은 교과과정만으로 익힐 수 없고,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 실습생들은 교과 과정에서 배운 사회복지 이론들을 실습을 통하여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직접 실천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 실습생들은 실습 과정을 통하여 다른 활동으로는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적성 및 장·단과 같은 자아 인식을 경험할 수 있다.
- 실습생들은 실습 과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의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제반 사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3

실습 관련 기준요건 사항

실습생 학년기준	3학년 1학기를 이수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교 사회복지현장실습은 3학년 1학기를 이수한 학생이 수행할 수 있다. - 실습 1회는 필수적으로 이수 (졸업 자격, 사회복지사 2급 자격 교부 및 1급 시험 자격 부여 조건) - 실습생은 실습기관에서의 현장실습활동의 수행뿐 아니라 학교에서 실습과목수업을 수강했을 때 실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현장실습과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 수강은 하나의 세트)
선수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 전 선수과목을 이수하되, 아래과목 중심으로 4과목 이상 이수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조사,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등 ○ 실습기관분야에 따라 아래 관련과목 중 2과목 이상 이수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청소년 복지론, 가족복지론, 여성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정신보건복지론 등
실습시간 법적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시간은 법적으로 160시간 이상을 수행해야 함 (이수학점: 3학점)
실습시간기준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60시간 이상 실습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60시간 이상 실습시행 -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상황에 따라 공휴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실습 가능
실습기관 법적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실습기관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단법인·재단법인 :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학과 홈페이지(swf.konyang.ac.kr) 커뮤니티 - 실습게시판 자료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인증기관 현황」에서 기관확인 필요
실습지도자 법적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실습지도자 기준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소지한 자는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 - 현장실습기관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 5명 이내 원칙
실습지도자 윤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지도자는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됨. ○ 실습지도자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실습생과 공유해야 함. ○ 실습지도자는 보다 내실있고 전문적인 실습지도를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단체에서 진행되는 실습지도자를 위한 교육을 통해 실습지도자로서의 전문지식과 기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4

실습 진행 절차

1단계 실습기관 탐색

- 학생 본인의 실습분야에 대한 욕구 파악하여, 해당 분야의 실습기관을 탐색
 -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학과 홈페이지, 지역 복지관 홈페이지 탐색 필요
 - 5월 부터 공지가 이뤄지니, 원하는 기관이 있으면 수시로 모집공고 확인 필요, 능동적으로 알고자 하는 노력 필요

2단계 실습기관 신청 및 선정

-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하여 실습 신청
 - 실습포트폴리오(참고양식 #1)등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 이메일로 발송한 후, 전화로 수신여부 필히 확인할 것
- 본인이 선정한 실습기관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선호도가 높은 기관이라면 대안의 실습기관을 선정
 - 만일 다중의 실습기관이 선정 된 경우 다음과 같은 철회절차를 이행
 - ① 학과 행정조교나 담당교수와의 면담 → ② 철회해야 할 기관에 실습철회 사유를 전화로 정중하게 이야기 함.
 - ③ 기관에 철회가 신청되면 학교조교를 경유하여 학과차원에서 공문을 발송 → ④ 실습신청 철회완료
- 실습기관 최종 선정
 - 실습기관 최종 선정된 이후 과정을 기관으로부터 확인할 것

3단계 학교에 통보

- 선정된 실습기관을 학교(사회복지학과 담당 행정 직원)에게 실습계획서(참고양식 #2) 제출
 - 학교는 실습생의 실습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실습수락 요청 공문을 기관으로 발송해야 함
- 실습기관 선정 후, 학교에 통보 권장 일자
 - 늦어도 6월 중순까지 필히 완료

4단계 실습수행

- 실습시작 전 혹은 실습당일 실습기관 별 오리엔테이션 실시
 - 실습생은 실습시작 전 슈퍼바이저와 실습계약서를 작성 하도록 권고(기관사정에 따라 다름)
- 실습평가 실시
 - [중간평가]** 실습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평가를 실시 함(기관사정에 따라 다름).
 - [종결평가]** 실습 마지막 날 실습 종결평가를 실시 함.
- 실습종결
 - 실습기관 실습지도자에게 실습평가서(참고양식 #4)를 작성하여 본교 사회복지학과로 우편 발송 요청
 - 학생을 통하여 실습평가서를 학교에 전달하거나, 팩스 혹은 이메일로 전달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교부를 위해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참고양식 #5)를 실습기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개별적으로 보관.

5단계 실습자료 제출

- 실습과 관련한 자료를 학교에 제출
 - 실습생은 실습계약서, 기관분석보고서, 중간평가서, 종결평가서, 실습일지 등의 자료를 학교가 제시한 양식에 맞게 제출하여 제출
 - 실습관련 양식(실습평가서 및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포함)은 학과 홈페이지 [커뮤니티 - 실습게시판] 탑재

5

실습생의 자세

-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참여가 필요하다.
-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
- 실습내용에 적합한 복장을 갖춘다.
- 실습이 실무현장에서 구체적이고 응용적인 실천을 학습하는 것임을 명심한다.
- 주어진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일한다.
- 기관의 정책, 방침, 모든 내규 등을 속히 익히고 존중하며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모든 기록은 정확하게 한다.
- 제시된 과제물은 기한에 맞추어 제출한다.
- 실습기관의 클라이언트 또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철저히 지킨다.
- 직원 또는 실습생 간의 예절을 지키고 서로 협조하는 태도를 갖는다.
- 타 부서 또는 유관 기관의 직원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다.
- 지각, 결석이 없도록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퇴나 결석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실습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외출 또는 퇴근 시 슈퍼바이저의 지시에 따른다.
- 학교를 대표한다는 자세를 갖는다.
-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태도를 잃지 않는다.

6

학교에서의 실습지도

 실습지도 교수

- 조 지 용 교수 (georzi@konyang.ac.kr / 041-730-5535 / 인문관 418호)
- 사회복지현장실습 지도교수 /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담당

 실습 행정 담당

- 김 재 룡 선생 사회복지학과 행정 담당 (yoo367@konyang.ac.kr / 041-730-5339)
- 실습관련 상담, 실습계약 공문발송, 실습평가서 접수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행정 담당

 학교에서의 실습교육

개설교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2학기 개설과목 (3학년 대상)

- 여름방학 실습지는 해당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Q1. 실습기관 선정은 전적으로 ‘학생 스스로 담당’해야 하는 것 입니까?

A 그렇습니다. 실습지 선정은 전적으로 학생의 책임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실습지 정보를 제공하며, 실습기관 선택에 대한 상담과 문의에 대한 응답제공을 해 드립니다.

Q2. 현장실습 전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기관에서 실습을 받아주지 않나요?

A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필수과목은 이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습기관분야에 따라 관련과목을 이수하기를 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장애인복지론이나 정신건강복지론을 이수한 학생을 선호할 수 있겠죠.

Q3. 슈퍼바이저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A 슈퍼바이저 자격요건은 경력 사회복지사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요건은 본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1급인 경우 3년 이상 실무경력자이며, 2급인 경우 5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합니다.

Q4. 학교의 실습기관리스트에는 제가 하려는 기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습기관으로 가능한가요?

A 우선 학과조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관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며, 슈퍼비전을 제공할 사회복지경력 실습지도자가 확인된 다음에 실습기관으로 가능한지의 결정이 이뤄집니다.

Q5. 제가 원하는 기관은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관입니다. 신청은 했으나 떨어질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학생이 이번에 꼭 실습을 해야 한다면 다수의 기관에 실습신청을 하십시오. 다행히 원하는 기관이 되신다면 다른 신청기관에는 학교(학과 담당직원 또는 교수)의 도움을 받아 신청철회를 하시면 됩니다(3페이지 참조).

Q6. 기관에 실습비는 왜 내야 하는가요?

A 기관에 내는 실습비는 기관에서 학생의 실습지도와 실습진행시 요구되는 체제비용을 학생에게 부담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관마다 다르나 평균 10만원 정도의 실습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7. 실습기관에서 사용하는 실습일지 등 양식이 학교와 다릅니다.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A 기관의 원칙을 존용하십시오. 학교양식보다는 기관이 원하는 양식이 있을 경우에는 기관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8.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방학 때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 군대를 가는데 실습한 것을 나중에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방중 실습은 바로 다음학기에 해당 수업을 들어야 해당 실습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 실습 이후 군대를 가면 다음학기에 수업을 연계하여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군대 제대 후 복학 하기 전 방학 때 실습을 하시고, 다음 학기에 실습수업을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실습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학업계획을 세운후 실습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9.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왜 필요한 것인가요?

A 2010년 입학자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사회복지현장 실습이 법적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습교육의 내실화와 질관리를 위해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의 기준 원칙을 세우고, 이에 대한 증명을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장실습확인서는 자격증 신청시 반드시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습 후 학생이 개별적으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분실 시에는 기관에 연락하여 재발급을 개인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Q10.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에 실습지도교수는 학교 지도교수님 이름을 기재해야 하나요?

A 실습지도교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지도교수님이 아닌 실습담당 교수님 성함을 적으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 기재의 잘못으로 사회복지사자격 발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실습일지 작성목적

실습 일에 시간을 어떻게 보냈으며, 무슨 업무를 하였는지 혹은 어떠한 경험이나 관찰을 하였는지 기록함으로써 실습생 자신과 실습지도자, 실습지도교수는 학습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수행된 구체적인 활동을 모니터 할 수 있게 된다.

실습생이 수행한 업무내용뿐 아니라,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한다면, 실습생 스스로가 자신의 장점, 부족한 점을 인식하여 학습경험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며, 실습지도자는 실습업무 수행활동에 대한 실습생의 반응도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습일지를 통하여 자신의 업무수행 뿐 아니라 기관업무 수행상 발견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발전적인 제언을 한다면, 기관운영에 간접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2. 실습일지 작성원칙

실습 과정 중 실습생이 무엇을 하였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시간대별로 모든 활동(예 : 직접수행, 관찰, 휴식시간, 교육 등)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다. 실습생은 각 활동내용뿐 아니라,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실습일 전체일정 및 자신의 수행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제시한다. 실습일지는 공식적인 실습지도 시간 전에 반드시 실습지도자에게 제출하며(일반적으로 실습당일 아침), 실습지도자는 지도 란에 실습일지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1) 사실대로 작성한다.

- 가급적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한다.
 - 올바른 뜻의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쓴다.
 - 내용상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의 윤리규정에 위배된다.
 -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
- 예) 하루 종일 청소, 잔심부름 경우 → 내용은 잔뜩 기록(기관 - 사회복지사 - 실습생 모두 책임).
하루의 일과를 일부 삭제하는 경우 → 내용을 누락 기록(기관 - 사회복지사 - 실습생 모두 책임).
- 예) 실습을 대충하고 일지를 작성하는 경우(기관 - 사회복지사 - 실습생 모두 책임).

2) 현장에서 만난 클라이언트(당사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적어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 실습지도자나 기관 담당자 선생님의 이름과 직책은 정확하게 적어야 하지만, 반드시 클라이언트(당사자)의 실명은 실습일지에 기록해서는 안 되며, 김OO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실습일지 뿐만 아니라 모든 공식적인 기록과 과제에 익명으로 하며, 사진 등 개인내용등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구체적·객관적·논리적·공정적으로 작성한다. 대충적·주관적·감성적·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

- 대충적 예) : 현황만 제시, 문제점만 제시, 개선방안만 제시. → 서론, 본론, 결론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한다.

- 주관적 예) : 노인시설에서 노인학대 사례를 보며 우리나라의 모든 노인복지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 감정적 예) : 실습생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감상적인 기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부정적 예) : 시종일관 문제점만 지적 → 가치관의 문제(고정관념편견아집그릇된 사고방식 등).

4)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 전문용어와 나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 전문용어 예) : 상담자 - 피상담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원봉사 - 실습.
 - 나이 예) : 영아(3세미만), 유아(6세미만), 아동(18세미만), 청소년(19세미만, 9이상-24세미만), 소년소녀가정(18세미만).
- 각종 기관의 고유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약어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 기관 예) : 사회복지관 →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 종합복지관.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 충남사회협.
 - 학교명 예) : 사회복지 → 사복
 - 전문가 예) : client → ct. 사회복지사 → 복지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전담공무원.

5) 글씨는 깨끗하고 단정하게 작성한다.

- 글 쓰는 글쓴이의 심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필체나 글씨에도 신경 써야 한다.
- 컴퓨터로 일지를 작성할 경우 특히 오자나 탈자에 유의하여야 한다.

6) 문어체로 작성한다.

- 문어체 예) : 실습이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접목시켜 응용하는 것이다.
- 존어체 예) : 실습이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접목시켜 응용하는 것입니다.
- 물음체 예) : 실습이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접목시켜 응용하는 것일까?
- 애매모호체 예) : 실습이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접목시켜 응용하는 것일까 싶다.

7) 맞춤법에 유의하여야 한다.

- 워드프로세서로 작업한 이후 검토·맞춤법검사(한글프로그램 기준)를 꼭 하고 제출한다.
- 가장 좋은 방법은 문서작성이후 소리 내어서 읽어보고, 동료 실습생과 cross-check를 하도록 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2.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가. 실습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및 기관 단체로 한다.
-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하며, 1명이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는 5명 이내 일 것
- 다. 실습시간 : 사회복지현장실습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선서문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참고양식#1 실습기관 지원시 기관에 송부

실습생 프로파일

1. 인적사항

(사진)	실습생명		성 별		생년월일	
	소속	대학교(원)		전공	학년(학기)	
	현주소					
	전화번호	집:	핸드폰:	E-mail		

2. 이수 전공과목

교과목명	이수 완료	현재 이수	교과목명	이수 완료	현재 이수	교과목명	이수 완료	현재 이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조사론			※상기 8교과목은 자격시험 필수교과로, 4과목이상 이수해야 실습신청이 가능함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가족복지론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여성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산업복지론			자원봉사론		
사회문제론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보장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윤리와철학								

3. 경력

구분 (취업,실습,봉사)	기관	기간	내용

4.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된 동기

5. 실습 기관 선택 이유

6. 실습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 측정가능한 성과 목표를 작성할 것 (피해야 할 목표 : 결석과 지각하지 않겠다. 완전출석하겠다 등)

7. 실습을 마친 후 목표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

※ 6번에서 기재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작성 (목표가 5가지이면 기준도 5가지로 제시)

8. 사회복지를 실천하는데 있어 자신의 강점과 약점

사회복지 지식 및 기술의 측면	
개인적인 측면	

9. 취미 및 특기

10.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및 실습지도교수에게 바라는 점

참고양식#2 (실습기관 정해진 이후 조교에게 제출 / 학교 고유양식)

실 습 계 획 서

(본 문서를 제출할 때는 빨간색 글씨를 모두 삭제해주시시오.)

소 속	건양대학교	학과	학년	성명	
학 번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연 락 처	☎				(FAX)
실습지주소	우편번호() 주소:				
실습기간	년 월 일 ~ 월 일 (현장실습학기: 학년도 학기) ※ [현장실습학기란]에는 실습과목을 수강(이수)하는 해당년도 및 학기를 기재 (예시: 2020학년도 1학기 또는 2학기)				
실습지도자 (수퍼바이저)	성명		직위	실습지도교수	
	연락처				
	이메일				

1. 실습목적

(표 안 글 : 굴림, 글자크기 10, 보통)

2. 실습목표

(표 안 글 : 굴림, 글자크기 10, 보통)

3. 실습지 선택 이유

(표 안 글 : 굴림, 글자크기 10, 보통)

4. 실습을 통해 배우고 싶은 것

(표 안 글 : 굴림, 글자크기 10, 보통)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

실습일시	2019년 월 일	실습지도자	
		실습생	
실습내용 (진행시간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기술)			
실습생의견 (새롭게 알게된 점, 의문사항, 건의 등)			
실습지도자 조언			
내일의 실습계획			

참고양식#4 실습종료후 기관이 학교로 우편발송 (*실습생 열람 불가)

실습평가서

기관명		실습지도자	
실습부서		실습지도교수	* 실습교과목 전담 교수 이름
실습기간			
실습생		평가일시	

* 출석상황

- 무단결석 없음
 무단결석 1회
 무단결석 2회
 무단결석 3회 이상

* 다음은 실습생에 관한 평가입니다. 실습생이 실습지도 기간동안 보여주었던 태도와 행동을 기준으로 아래 항목에 솔직하게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습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에 관해서만** 평가하여주시고, 평균에는 평가항목 총점을 평가항목 개수로 나눈 점수를 기입하면 됩니다.

(1점: 매우 그렇지 못하다.~5점: 매우 그렇다.)

항목	내용	1	2	3	4	5
실습지도에 대한 태도	1. 실습지도 시간을 엄수한다.					
	2.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실습지도에 참여한다.					
	3. 실습지도에서 지적된 내용을 수용한다.					
	4. 배우는 입장에서 진지하게 노력하고 발전하려는 태도를 갖는다.					
	5. 실습지도자와 실습생으로서 공식적 관계를 형성한다.					
기관 이해 및 관계 유지	6. 동료실습생과 긍정적이고 원만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7. 기관의 목적, 정책, 규칙, 사업내용을 이해한다.					
	8. 기관 내에서 실습생으로서의 권한과 한계를 알고 일한다.					
	9. 기관내 타직원과 협조적인 대인관계를 형성, 유지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기본적 태도와 자질	10.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					
	11. 할당된 시간 안에 일을 계획하고 수행한다.					
	12.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인식하고 대응한다.					
	13. 사회복지실천 지식을 실습내용에 적용한다.					
	14.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를 갖고 임한다.					
	15. 전문가로서의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객관성을 유지한다.					
	16. 실습지도 내용을 실행에 옮긴다.					
17. 실습과정을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기록	18. 기록, 보고서 등을 정해진 일시에 제출한다.					
	19. 실습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록한다.					
	20. 실습내용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21.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 및 실습생의 사고와 감정을 기록한다.					
	22. 실습지도를 통해 지적된 사항 및 배운 것을 정확히 기록한다.					

항목	내용	1	2	3	4	5
전문적 태도와 관계 형성	23.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형성하고 활용한다.					
	24. 전문적 관계형성에서 동정과 감정이입을 구별하여 적용한다.					
	25. 주변의 자원을 파악하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26. 비심판적이며 경청과 수용의 태도를 갖는다.					
	27.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동기의 한계를 수용한다.					
	28. 실습지도자가 지시한 것을 잘 파악하여 실행에 옮긴다.					
개인에 대한 개입	29.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의사소통과 암시적인 의사소통을 이해한다.					
	30. 실습생이 의도한 바를 클라이언트에게 명확하게 전달한다.					
	31.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상황에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한다.					
	32.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이론에 기초하여 사정한다.					
	33. 클라이언트 가족 등 주변의 지지자원을 활용한다.					
	34. 클라이언트와 환경의 상호역동성의 이해아래 개입목표와 전략을 수립한다.					
가족에 대한 개입	35. 개입목표에 따라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36. 가족의 역동성을 파악하고 가족상황에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한다.					
	37. 가족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여 필요한 가족개입의 기술을 활용한다.					
	38. 가족의 상호역동성의 이해아래 개입목표와 전략을 수립한다.					
집단에 대한 개입	39. 가족 구성원을 개별화하고 성원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한다.					
	40. 집단 역동을 파악하여 의미있는 개입으로 집단을 지도한다.					
	41. 집단에서 주 진행자와 보조진행자의 의미와 역할을 알고 실천한다.					
	42. 집단의 구조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집단지도의 기술을 활용한다.					
	43. 집단 성원을 개별화하고 성원간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44. 집단의 목적에 대해 정확히 사정한다.					
지역 사회에 대한 개입	45. 정확한 사정에 입각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46. 집단의 상호작용이 목적 지향적이고 성원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한다.					
	47.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제를 파악하도록 돕는다.					
	48. 파악된 지역사회요구를 사회행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한다.					
정책 및 행정 분야	49. 지역사회구조와 권력에 대해 이해하고 그 지역사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50. 지역사회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한다.					
	51. 정책형성 및 개선과 관련된 이해집단들의 문제 상황 및 요구와 정책발의자들 및 집행자들의 이해관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한다.					
	52. 정책형성 및 개선과 관련된 이해집단과 건설적이고 전문적인 관계를 맺는다.					
	53. 문제 상황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기관 고유 항목*	54. 기본정보를 정확히 사용하며 실증적인 자료분석의 지식을 갖고 문제를 분석한다.					
	55. 사회복지행정체계 및 전달체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다.					
	56.					
	57.					
	58.					
	59.					
	60.					

* 기관 고유 항목에는 기관의 특성과 실습상황에 맞는 평가항목을 실습지도자가 추가적으로 직접 기입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총평	(실습생의 실천가로서의 장단점 및 대학에 대한 건의)				
평가문항 개수			총점		
평균 (총점÷평가문항개 수)	(기록 후 테이프 부착 후 실습지도자 서명 요망)				
평점부여	여기에 부여하는 평점은 실습생이 받게 되는 성적표상의 최종 평점은 아닙니다. 대학실습지도점수와 더불어 사회복지현장실습 평점 부여시 주요 고려사항이 됩니다.				
	<input type="checkbox"/> A ⁺	<input type="checkbox"/> B ⁺	<input type="checkbox"/> C ⁺	<input type="checkbox"/> D ⁺	<input type="checkbox"/> F
	<input type="checkbox"/> A ⁰	<input type="checkbox"/> B ⁰	<input type="checkbox"/> C ⁰	<input type="checkbox"/> D ⁰	
	<input type="checkbox"/> A ⁻	<input type="checkbox"/> B ⁻	<input type="checkbox"/> C ⁻	<input type="checkbox"/> D ⁻	

실습지도자: _____ 인

기 관 장: _____ 인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 신규발급, [] 재발급

(앞쪽)

실습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를 기재 바랍니다	
	휴대전화번호		학교명	※ 현재 소속중인 학교명을 기재 바랍니다.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관리번호	※ 실습기관 선정 시 부여된 등록번호 기재	
	기관 주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		전화번호	
	실습 지도자명	※ 실습생의 실습을 지도한 지도자명 기재	사회복지사자격번호 (취득일자)	제 - 호	(. .)
실습기간	실습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실습 시간	총 시간 (총 회, 1일 평균 시간)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에 의해 기관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상기 실습생이 위와 같이 기관실습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실습 지도자 :

(서명 또는 인)

기관실습 실시기관 :

(직인)

교육기관 및 세미나교수	교육기관 유형	[] 오프라인 / [] 온라인	교육기관명	※ 실습세미나 교육기관명을 기재 바랍니다.	
	실습세미나 교수명		학과명		
	실습세미나 교수 취득학위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 학사, [] 석사, [] 박사	교육기관 전화번호		
실습세미나	실습세미나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실습세미나 횟수(시간)	총 회 (시간)	대면방식 세미나 횟수(시간)	총 회 (시간)	
	오프라인 세미나	총 회	실시간 온라인 화상세미나	총 회	
간접실습	학교명		간접실습 지도교수		
	학과명		간접실습 실시시간	총 시간	
	간접실습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교육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세미나 지도교수에 의해 실습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상기 실습생은 위와 같이 실습세미나를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실습세미나 교수 :

(서명 또는 인)

학과장 :

(직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재발급 사유	※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재발급 시 재발급 사유 기재 바랍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제3조 관련)</p> <p>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p> <p>② 기관실습 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p> <p>③ 기관실습 시간 :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단, 시행일 2020.1.1. 기준일 2019.12.3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p> <p>④ 실습세미나 :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p> <p>⑤ 실습세미나 교수 :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p> <p>※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p>	